

광주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143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6. 1.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6. 19. 접수 제123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5. 14.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D은 2014. 6.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4. 6. 19. 접수 제1231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위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4. 6. 19.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때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20. 4. 24.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020. 4. 22.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경과하면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부동산 별지목록

1.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월근콘크리트조 평층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746.40㎡

2층 746.40㎡

3층 746.40㎡

4층 746.40㎡

5층 746.40㎡

6층 746.40㎡

7층 746.40㎡

8층 746.40㎡

9층 746.40㎡

10층 746.40㎡

11층 746.40㎡

12층 746.40㎡

13층 746.40㎡

14층 746.40㎡

15층 746.40㎡

지하층 739.20㎡

부속 건물

월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평층래브지붕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복지동, 창고, 경비실지하1,2층 지상1층 5673.40㎡

1층 129.65㎡

2층 679.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서구 대 20341.7㎡

권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조 월근콘크리트조 59.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0341.7분의 36.52